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26 발의연월일: 2021. 1. 28.

발 의 자: 박찬대·고용진·권인숙

김영배 · 김철민 · 맹성규

서동용・신동근・유동수

윤준병 • 이규민 • 이성만

이수진 · 이탄희 · 조승래

허종식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. 원격교육은 그동안 등교·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를 뒤바꾸고 있으며,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.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따라,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 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,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,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(안 제3조).
- 나.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고,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다.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·운영, 원격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, 원격교육 에 필요한 교구·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7조).
- 라.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마.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,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9조).
- 바.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,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,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(안 제13조).

- 사.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음(안 제17조).
- 아. 교육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(안 22조).
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,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.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라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
 - 마.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
- 2. "정보통신매체"란 유선·무선·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

- 의 검색·수집·저장·가공·처리·송신·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컴퓨터·방송통신설비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.
- 3. "원격교육"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·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(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).
- 4. "원격교육콘텐츠"란 원격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·문자·도형 ·색채·음성·음향·이미지 및 영상 등(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 다)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- 제3조(기본원칙)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(對面)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기관의 장이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학생의 신체적·정신적 장애,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
 - 2.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
 - 3.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
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의 장애학생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 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 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

제6조(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(이하 "학교등"이라 한다)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

- 을 따라야 한다.
- 1.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
- 2.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(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)
- 3.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(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)
-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.
- 제7조(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운영
 - 2. 원격교육콘텐츠 개발·보급
 - 3.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·장비 및 정보 통신망 등 시설(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)
 - 4.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
 - 5.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

-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·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의 교육용 정보통신기기에 대 한 권장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.
- 제8조(학교등의 교육과 연계) ①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있다.
 -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9조(대체학습 등 지원)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 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학교등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0조(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)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
- 2.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
- 3.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
- 4.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·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방과후학교 원격교육 과정) 학교등의 장은 방과후학교 원격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.

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

- 제12조(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(이하 "대학등"이라 한다)의 원격교육 운영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 - 1.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
 - 2.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(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만 해당한다)
- 제13조(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)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, 원격교육콘텐츠 공동

개발, 학점 교류 및 필요한 시설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대학등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강좌 원격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- 제14조(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)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해 교원, 학생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 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)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·장비 및 시 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
 - 2.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으로 충당한다.
- 제16조(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)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 (연구자를 포함한다)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

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

- 제17조(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 •평가,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- 제18조(원격교육 통계조사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6조의2제2 항부터 제8항까지, 「초중등교육법」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.
 - ③ 제1항의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하여 교육통계조사의 대상,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 및

제7조제1항제1호의 원격교육시스템 등에서 취득·생산·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- 1.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 지원
- 2.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·학 습방법 개선
- 3.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량 학습시간 진도율
- 2.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가명처리(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처리)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하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격교육 데이터의 수집 절차, 관리 주체, 이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20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 ·단체,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

되어서는 아니 된다.

-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21조(교원 원격교육 전념 환경 조성) 교육부장관·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해 전념할 수 있다.
- 제22조(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)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.
 - 1.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
 - 5.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
 - 6.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경우
 -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
-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23조(민간 및 국제협력)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한 민간 및 다른 국가(국제기구를 포함한다)와의 협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(교육훈련 포함)
 - 2.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
 - 3.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·응용 및 운 영 지원
 - 4.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
 - 5.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 -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장 보 칙

- 제24조(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)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2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